

의안번호	제 112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337 회)

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
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5. 1. 19.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월 19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충북경제자유구역 「충주 에코폴리스 지구」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·관 합동개발을 위하여,
- 충청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「상법」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회사 명칭 및 사업(안 제3조)
 - 회사 명칭과 사업은 정관으로 정함
- 출자의 방법 및 한도(안 제5조)
 - 설립자본금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하며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함
- 주주권 행사(안 제6조)
 - 충청북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출자하여 충청북도 외의 자와 공동으로 「상법」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식회사” 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)란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.
2. “출자”란 회사를 설립·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물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회사의 명칭 및 사업)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.

1.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및 분양
2. 제1호에 따른 부대 사업

제4조(사무소)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5조(출자의 방법 및 한도) ①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한다)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주주권의 행사)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충청북도 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.

제7조(공무원의 파견·겸임) 도지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타 법령의 적용·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「상법」의 규정에 따르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조(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"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
2.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
3.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위 치 : 충주 중앙탑면 가흥·장천리 일원 (2.2km²)
- 사업기간 : 2013 ~ 2020 (8년간) / 사업비 2,234억원
- 내 용 : 충북경제자유구역 「충주 에코폴리스 지구」 개발
- 추진근거 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- 개발방식 : 제3섹터 개발 (근거 : 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)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 자본금
- 지구단위 개발을 위한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한 비용
 - 보상비, 공사비, 조사설계비 및 기타 일반관리비 등 비용
- 투자유치, 토지분양 및 매각을 위한 영업활동 관련 제비용

3. 관련조문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을 위한 민·관 합동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·운영
- 충북경제자유구역 「충주 에코폴리스 지구」 개발
 - 2.2km²(66만평) / 자동차 전장부품, 신재생에너지, 물류·유통 중심 경제자유구역 건설

나. 추계 결과

- 사업시행자 지정,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: '15년 2월
 - 지분율 : 도 15%, 충주시 10%, 민간개발 75%
-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: '15. 2월 ~12월
- 착수 및 준공 : '16년 ~ '20년

다. 재원조달방안

- 특수목적법인 설립('15년) : 30억원 (도 4.5, 충주시 3.0, 민간기업 22.5)
-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및 분양('15 ~ '20) : 2,204억원
 - SPC 명의 대출금 및 준공 2년후 미분양 용지에 대한 출자비율에 의한 상환 및 매입 협약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시청 총괄부장 유경중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~2차년도 (13~14년)	3차년도 (15년)	4차년도 (16년)	5차년도 (17년)	6차년도 (18년)	7차년도 (19년)	8차년도 (20년)	계
세 입	-	3,000	87,063	78,140	45,936	5,798	3,445	223,382
도 비	-	450	-	-	-	-	-	450
기 타	-	2,550	87,063	78,140	45,936	5,798	3,445	222,932
세 출	-	3,000	87,063	78,140	45,936	5,798	3,445	223,382
보 상 비			35,508	17,754	5,918	-	-	59,180
공 사 비			25,424	49,198	30,160	-	-	104,782
조사설계비		3,000	9,862	-	-	-	-	12,862
기 타 비 용			16,269	11,188	9,858	5,798	3,445	46,558
재원 조달		3,000	87,063	78,140	45,936	5,798	3,445	223,382
의 존 재 원	소 계	-	-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	-	-
	지방 교부세	-	-	-	-	-	-	-
자 체 수 입	소 계		450	-	-	-	-	450
	지방세		450	-	-	-	-	450
	세외수입	-	-	-	-	-	-	-
지 방 채	-	-	-	-	-	-	-	-
기 금	-	-	-	-	-	-	-	-
소 계	-	-	-	-	-	-	-	-
특별회계	-	-	-	-	-	-	-	-
시·군비	-	300						300
기 타 (차입금, 민자 예비등)	-	2,250 (민자)	87,063 (민자)	78,140 (민자)	45,936 (민자)	5,798 (민자)	3,445 (민자)	222,632 (민자)